

# ESG위원회 규정



## 목 차

제1장 총 칙 .....	1
제2장 구성 및 운영 .....	1
제3장 회 의 .....	2
제4장 권한 및 의무 .....	2
제5장 보 칙 .....	3
부 칙 .....	4

# ESG위원회 규정

2022. 12. 23. 제 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ESG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그 구성, 회의, 권한 및 의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3조(직무와 권한)** ① 위원회는 투명한 지배구조의 확립과 환경, 사회에 미치는 회사의 영향을 분석하여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의 환경, 사회, 지배구조 부문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.

② 위원회는 제10조의 각 부의사항을 심의 의결하고, 이사회에 부의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##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
**제4조(구성 및 임기)** ①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.

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령,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시점까지로 한다.

③ 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
**제5조(위원장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 3 장 회 의

**제6조(회의)**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
② 정기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경우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.

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**제7조(소집권자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단, 위원장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**제8조(소집절차)** ① 위원회의 소집은 회일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**제9조(결의방법)**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 제 4 장 권한 및 의무

**제10조(부의사항)**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해 사전 심의·결의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

고한다. 다만, 법령이나 정관, 이사회규정상 위원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 후 그 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한다.

1. 회사의 ESG 전략 기본 방향
2. 회사의 ESG 이행사항 결과 및 계획
3. 회사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 심의
4. 회사의 ESG 역량 개발 및 내재화를 위한 지원 필요 사항
5. 기타 위원회에서 지속경영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

**제11조(관계인의 의견청취 등)** ①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, 필요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.

**제12조(통지의무)** 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 부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 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.

**제13조(의사록)** ①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,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 제 5 장 보칙

**제14조(지원부서)**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고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.

②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주요 ESG 중장기 목표 및 관리 지표 설정 지원
2. ESG 활동 평가 및 성과 관리 지원
3. ESG 관련 대외 Communication
4. 위원회 소집통지, 부의 안건의 준비 및 배포, 의사록 작성 및 부의 안건의 사후관리 등
5. 위원회 사무 전반에 대한 실무적 지원

**제15조(규정의 개정)**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 결의에 의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